

재정통계 BRIEF

Statistics of Public Fi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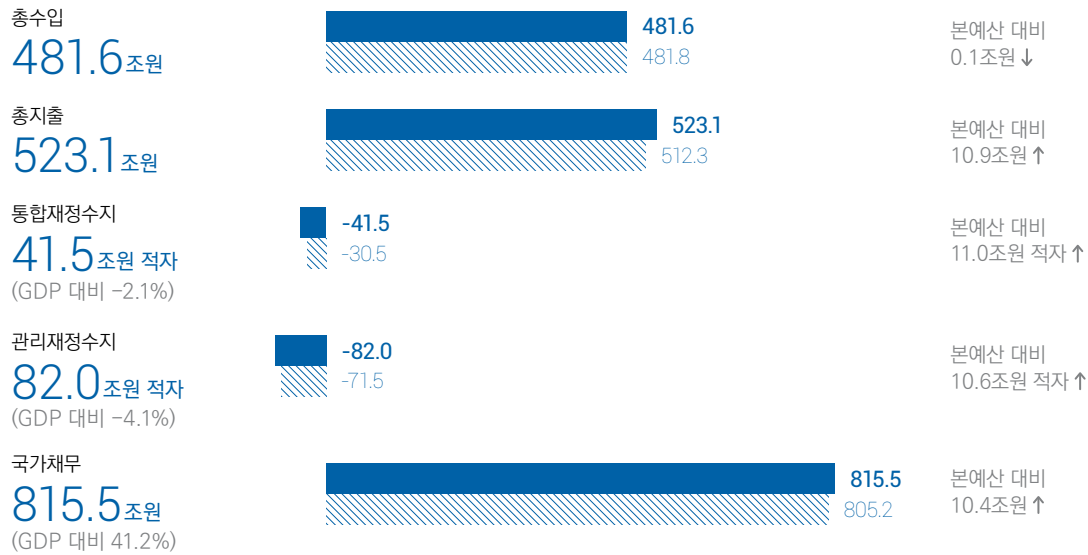
추가경정예산
Supplementary Budget



No 5

규모 Volume

지난 3월 17일, 총지출을 10.9조원 확대하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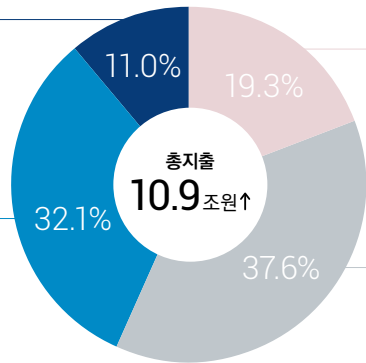
구성 Component

1.2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 0.2 코로나19 피해지역 대상 지역고용 특별지원 등
- 0.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 0.8 특별재난지역 재난대책비 및 교부세·교부금 정산 등

3.5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 2.9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긴급복지 등
- 0.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



2.1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 0.2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마스크 공급역량 강화
- 1.9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4.1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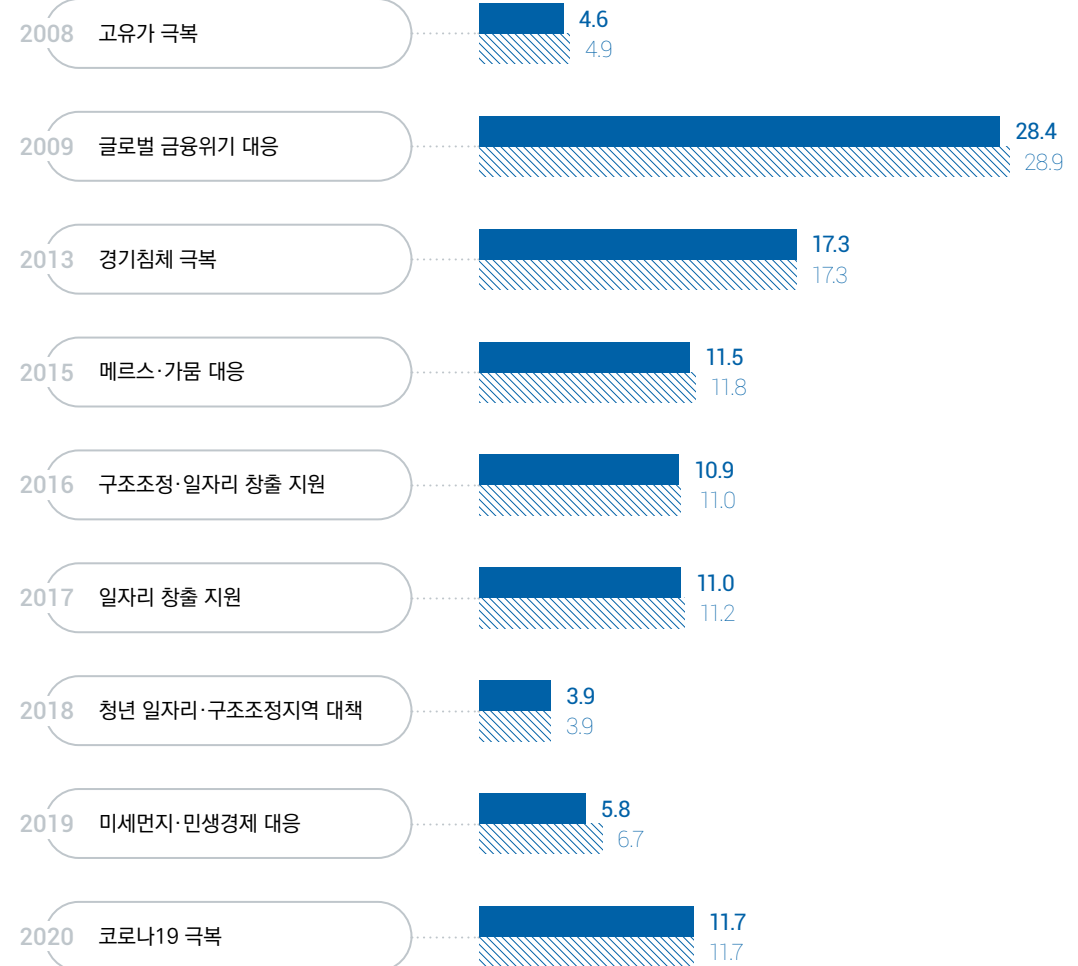
- 3.1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최저금리 대출 확대
- 0.6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 등
- 0.4 코로나19 피해점포·전통시장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 등

※ 단위: 조원

추이 Trends

연도별 추가경정예산의 정부안·확정 예산 규모

■ 확정 예산 ■ 정부안



※ 단위: 조원

※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출확대와 세입경정의 합

용어해설 Glossary

추가경정예산

정부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

「대한민국 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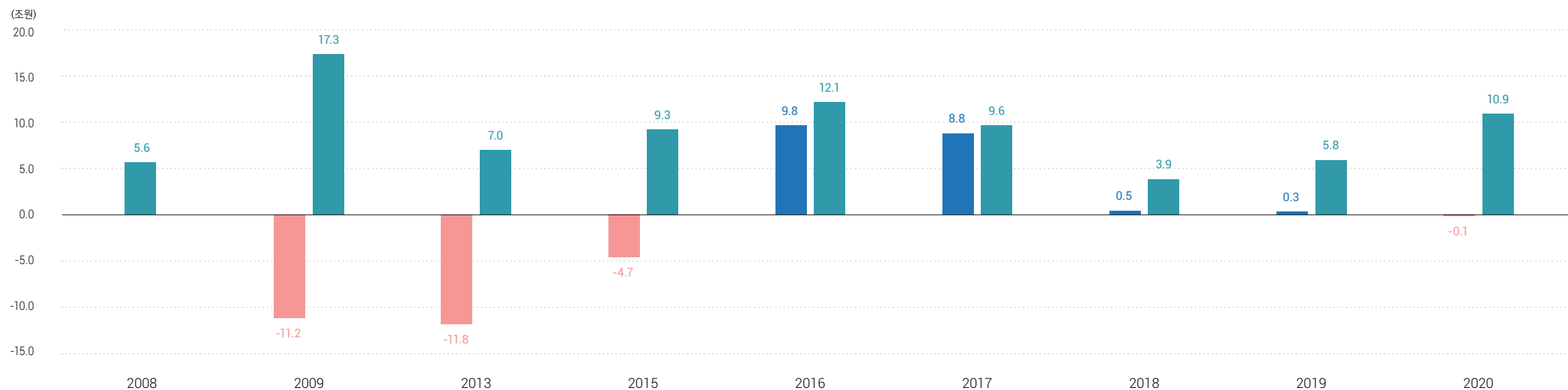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추가경정예산 총수입·총지출의 본예산 대비 증감 추이

■ 총수입 증액 ■ 총수입 감액 ■ 총지출 증액



	2008		2009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총수입	274.2	274.2	291.0	279.8	372.6	360.8	382.4	377.7	391.2	401.0	414.3	423.1	447.2	447.7	476.1	476.4	481.8	481.6
총지출	257.2	262.8	284.5	301.8	342.0	349.0	375.4	384.7	386.4	398.5	400.5	410.1	428.8	432.7	469.6	475.4	512.3	523.1
목적	고유가 극복 및 민생안정		경제위기의 조기극복 일자리 유지·창출 및 민생안정		민생안정 및 경제회복		메르스 극복 및 서민생활 안정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및 구조조정지역 지원		미세먼지저감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조기극복	
주요 내용	0.8 전기요금 안정지원 0.4 도시가스용 원료비 안정지원 0.1 화물자동차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등		1.3 희망근로 프로젝트지원 0.8 긴급경영안정(용자) 0.4 고용유지지원금 0.2 보건복지 시설개량 0.1 긴급복지		1.4 예비비(재해복구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등) 0.3 소상공인지원(용자) 0.1 긴급경영안정지원(용자) 0.1 의료급여경상보조 0.1 하수관거정비 0.1 수리시설개보수		0.5 긴급경영안정지원(용자) 0.2 민자유치건설 보조금 0.2 관광산업 용자지원 0.2 예비비(메르스 피해 지원경비 등) 0.1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0.1 감염병예방관리		0.4 무역보험기금출연 0.2 예비비(학교시설 개선 및 국가 예방접종 등) 0.1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출자) 0.1 의료급여경상보조 0.1 해운보증기구설립		0.8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0.7 주택구입·전세자금 (용자) 0.1 국립대학시설확충 0.1 4차산업혁명파트너 자금(출자) 0.1 장애인 활동지원 0.1 고용창출장려금		2.5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0.1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0.1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0.1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0.7 대기개선 추진대책 0.4 구직급여 0.3 신성장기반자금(용자) 0.2 고용창출장려금 0.1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0.1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1.7 소상공인지원(용자) 1.0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0 예비비(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0.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0.4 고용창출장려금 0.4 감염병 대응 지원	
			-2.3 부가가치세 -2.1 법인세 -0.7 소득세		-5.7 법인세 -3.7 소득세 -2.1 부가가치세		-3.4 부가가치세 -1.9 법인세		5.4 법인세 2.5 소득세 1.7 부가가치세		3.9 소득세 3.3 법인세 1.0 부가가치세						-2.3 부가가치세 -0.1 법인세	
			22.0 국채발행		15.8 국채발행		9.6 국채발행								3.6 국채발행		10.3 국채발행	
국회 의결일	9월 18일		4월 29일		5월 7일		7월 24일		9월 2일		7월 22일		5월 21일		8월 2일		3월 17일	

※ 국채발행은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단위: 조원